

June 19, 2020

Legal Update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2020년 10월 1일 시행 예정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 · 풍력발전 ·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사업허가의 취득, 사업의 개시 및 양수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2020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라 합니다)은 2020년 5월 14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0년 6월 28일까지 의견제시를 받아 2020년 9월 말 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 · 풍력발전 ·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관련,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 · 풍력발전 ·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취득 전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7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

항, 별표3,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3 제1항). 이때 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발전사업 허가신청 14일 전에 사전고지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허가신청 7일 전에 사전고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위와 같이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본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한 발전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의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해결, 주민들의 보상요구사항 등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제한

기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개시 전 양수도 인가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3호).

개정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의 양수, 분할, 합병, 발전설비 규모 2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의 주식취득 등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양수도인가 시의 심사기준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수도가 불가능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종래 빈번하였던 **차익거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의 취득**에 일정 제약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전기사업의 양수도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사업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주식양수도의 방식을 통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 설비에 대한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을 사업정지명령사유로 추가

산지에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림청장 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31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31조의2 제3항,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 제5항).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는 발전사업자들이 산지에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하에서 관련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전 반드시 복구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9조 제4항 단서).

이는 기존에 ‘지체 없이’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거래 등의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사업개시 신고를 길게는 수 개월 뒤에 하는 관행이 있었던 부분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위 기한 내에 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 용량 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전기사업법 개정안 제7조의3).

구체적으로는 (i)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ii)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 **총 20개의 법령별로 요구되는 인·허가 등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함께 의제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위와 같은 조문이 신설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9월에 확정되므로,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T. 02-316-4068
E. shlee@shinkim.com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345
E. syjung@shinkim.com



최대혁
파트너변호사

T. 02-316-1708
E. dhchoi@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